

정관

제정일 2011년 7월 3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광은교회

- 목 차 -

제 1 장 : 총칙

제 2 장 : 회원 -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 예배와 집회

제 4 장 : 직원의 임무 선거 임직

제 5 장 : 공동의회(共同議會)

제 6 장 : 당회(치리회)

제 7 장 : 제직회

제 8 장 : 부속기관

제 9 장 : 인사

제 10 장 : 재산

제 11 장 : 재정

제 12 장 :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제 13 장 : 사업과 법인

제 14 장 : 회계 감사

제 15 장 : 부칙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 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칭하며 정치, 헌법적 규칙, 헌법의 용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대신) 헌법을 지칭한다).

제2조(주소) 본회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724번길 34(원종동362-1번지)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성경에 기초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대신)와 새경인노회(대신)의 지도와 본 교단의 교회선언, 신조, 신앙고백에 입각하여 복음증거와 교인 상호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신조) 본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서(信徒揭要書) 및 성경 대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한다.

제5조(신앙고백) 본회의 신앙고백은 사도신경과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한다.

1. 우리는 신구약 성경이 영감된 오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확 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는다.
2.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심을 믿는다.
3. 우리는 하나님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심을 믿는다.
4. 우리는 성육신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대속의 죽음, 육체적 부활, 그리고 역사적 재림을 믿는다.
5.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전적 부패,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통한 구속을 믿는다.
6. 우리는 성령의 중생하게 하시며, 회개하고 믿게 하시며, 내주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7.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와 주되심을 믿는다.
8.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예배, 복음증거, 교육, 성도의 교제, 기도, 봉사, 그리고 선교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교회의 문화적 및 사회적 책임을 믿는다.
9. 우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이며 역사적인 재림,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믿는다.
10.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와 대소요리문답에 나타난 전통적인 개혁신앙이 성경에 가장 충실한 표현으로 믿는다.

제6조 정관의 목적

1. 본 정관은 교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시하고 교회 재산을 소유 관리하며 교회내의 조직과 기구의 직무상 한계를 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정관을 근거로 당회에서는 각종 규정을 제·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각 부서는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 교인의 권리와 의무

제7조(교인정의) 교인의 구분과 각각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헌법제3장 제18조, 20조)

1. 원입교인 :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등록한 후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을 배우는 학습 받기 전의 교인을 말한다.

원입교인은 공동의회에 옵서버로 참관할 수 있다.

2. 학습교인 : 원입교인으로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 되고 만 14세 이상 된 교인으로서 당회에서 신앙에 대한 학습문답과 서약을 한 교인을 말한다.
공동의회 옵서버로 참관할 수 있다.

3. 세례교인 : 학습 받은 후 6개월 이상 된 교인으로 세례받기를 원하여 당회에서 문답을 한 후 세례를 받은 교인을 말한다.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4. 유아세례교인 : 만 2세 이하 어린이가 부모의 신앙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은 유아를 말한다. (부모 중 한쪽만 세례교인이면 가능하다).

5. 입교인 : 유아 세례를 받은 자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당회의 입교문답을 거친 후 입교인으로 선포되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이다.

공동의회 회원이 된다.

제8조(입회결정) 본회 교인의 입회 결정은 당회가 하며 교회 앞에 소개 될지라도 당회의 결정이 없으면 입회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정치 제3장 제18조, 세칙제7조).

제9조(권리) 본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만이 교회 주권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다음과 같다.(정치 제3장 제20조)

1.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所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

2. 교인은 선거 및 피선거권이 있다. 그러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계속 출석치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중지의 결정은 당회 결의에 의한다.

3. 무흠 입교인은 성찬에 참례하는 권한과 공동의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

4. 교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분량에 따라 일할(奉仕) 특권이 있다.

5. 확인 : 원입교인과 학습교인은 세례교인(입교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있는 자이며 치리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10조(의무) 본회 교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총회 헌법 정치 제3장 제19조).

1. 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2. 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3. 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및 선교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4. 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5. 교회 직원(직분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 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함이 당연하고 교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6. 교인은 진리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

함을 순히 복종해야 한다.

제11조(교인퇴회) 본회 교인이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않을 때 당회의 결의로 회원 명부에서 삭제하며 별명부에 기재한다.

제 3 장 예배와 집회

제12조(예배) 본회에서 실시하는 공식예배는 다음과 같다.(예배 제3장 제10조)

1. 주일예배 : 주일 낮에 드리는 예배
2. 찬양예배 : 주일 오후(밤)에 드리는 예배
3. 수요기도회 : 수요일 밤에 드리는 기도회
4. 절기예배 : 각 절기에 드리는 예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한다.(구역예배)

제13조(집회) 본회에서 실시하는 집회는 다음과 같다.

1. 철야기도회 : 필요시에 드리는 밤 기도회
2. 새벽기도회 : 새벽에 드리는 기도회
3. 부흥사경회 :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심령 부흥을 위해서 드리는 집회
4. 전도집회 : 각 면려회에서 실시하는 집회
5. 주일학교 : 주일학교 각 부에서 갖는 집회
6. 수양회 : 각 기관에서 신앙 수련을 위해서 갖는 집회
7. 강습회 : 신앙과 교육과 교양을 위해 갖는 집회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당회가 결정 및 인준한다.

제14조(행사를 위한 예배) 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서 드리는 위임, 임직, 은퇴, 추대예배는 당회가 결정, 주관하되 이는 주일에 드릴 수 없다.

제15조(예배인도자 및 시간) 예배의 장소와 시간은 당회가 결정하며, 예배 설교자 및 집회 강사는 당회장(담임목사)의 고유권한(강단권)이다. 다만 당회와 의논할 수 있다.
(예배지침 제3장)

제 4 장 직원의 임무, 선거, 임직

제16조(항존직) 본회의 항존직은 정치 제4장에 준하여 목사, 장로, 안수집사로 한다. 단 권사는 “교회의 임시직원” 여자로 재임명 절차 없이 만70세까지 시무할 수 있다.
각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목사 : 정치 제5장32조에 준하여 담임목사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예배를 위한 설교와 심방, 인사, 재정 및 모든 교회적 활동을 총괄한다.
2. 부목사 :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이다.(정치 제9장 제32조 3항).
3. 강도사(전도사) : 준 직원으로서 담임목사의 목회를 보좌한다. 강도사와 목사후보생은 개인으로는 그 당회 관리 아래 있고 직무상으로 노회 관리 아래 있다.(정치, 제9장 제67조).
4. 장로 : 정치 제6장 제42조에 준하여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보좌하며 교인들을 감독 보호한다.

5. 안수집사 : 정치 제7장 제51조에 의거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재정 및 봉사를 주관한다. 안수집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임시직(1년)으로 서리집사를 둔다.
6. 권사 :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인들을 친방 위로하며 봉사한다.

제17조(선거원칙) 본회의 모든 선거는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서 민주적 선거방식으로 한다.

제18조(선거권 피선거권) 세례교인(입교인)은 누구든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거나 치리된 자는 제외한다.

제19조(선거운동)

- ① 본회는 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당선케 하거나 또는 낙선케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후보의 자격을 가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교회 내에서나 밖에서 선거인을 상대로 친방하거나 향응과 금품 제공을 할 수 없다.

제20조(선거일 공고) 본회의 선거일은 당회가 결정하여 1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

제21조(선거사무) 본회의 선거사무는 당회가 관장한다.

제22조(후보자)

- ① 담임목사 청빙은 당회가 청빙위원회가 되며 청빙위원회는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추천한다.
- ② 장로, 집사, 권사의 선출시의 후보자는 헌법에서 정한 자격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당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23조(선거공보) 본회는 선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 또는 간단한 인적사항을 교회 게시판에 일정기간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4조(선거 방법)

- ① 목사청빙 : 당회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가부의 투표를 하되 공동의회 총투표자의 3분의 2이상의 가표를 득하여야 한다.
- ② 장로 : 노회에 증원청원하여 허락받은 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출하되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선출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 ③ 안수집사와 권사 : 당회에서 인원을 결정한 후 공동의회에서 1차 투표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에 선출된 후보자 전체를 놓고 2차로 찬반 투표를 하여 2/3 이상의 득표로 하되 반대하는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어서 표시 한다.
- ④ 명예권사 : 명예권사는 당회가 결정, 임명한다.
- ⑤ 협동장로 : 이명서를 가지고 입회된 무임장로가 당회의 결의로 협동장로가 되며 입회 후 2년이 경과하고 공동의회에서 시무장로로 피선되면 노회고시를 거쳐 취임식만 행함으로 시무장로가 된다.

⑤ 무임집사 : 타 교회에서 이명서를 가지고 입회된 이후 2년이 경과되고 공동의회에서 집사로 피선되면 취임식만 행하여 시무안수집사가 된다.

제25조(임직)

- ① 본회의 임직은 담임목사 위임과 직원 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직은 장로와 집사의 임직, 권사의 취임이 있다.
- ② 피택장로는 피택선거 후 6개월 이상 교육하고 노회 고시를 거쳐 임직한다.
- ③ 목사의 위임식은 노회 주관이나 장로와 집사의 임직식과 권사의 취임식은 본 교회 당회가 주관하며 모든 임직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내용과 금액을 당회에서 결정하여 교회 재정으로 부담한다.
- ④ 명예권사는 취임 선서를 해야 한다.
- ⑤ 70세 정년제에 해당된 직원의 은퇴 및 원로 추대식은 해당 연도의 12월에 행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기할 수 있다.

제26조(교육)

- ① 공동의회에서 피택된 임직자는 헌법의 규정대로 6개월 이상 상당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교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시행 한다.
- ② 적법하게 피택된 임직자일지라도 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당회의 결의로 임직식을 유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 5 장 공동의회(共同議會)

제27조(권한) 본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공동의회를 둔다(정치 제13장 제103조).

제28조(조직)

- ①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18세 이상 된 무흠입교인, 무흠 세례교인으로 한다.(정치14장제105조)
- ② 공동의회에는 회장과 서기를 두며, 회장은 당회장이 되고 서기는 당회의 서기가 겸임한다.(정치 제14장제105조3).

제29조(회의 소집) 공동의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결의한 때
2. 제직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3.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으로 당회가 결의한 때
4. 상회(노회, 총회)의 명령이 있어 당회가 소집을 결의한 때
5. 합법적으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이 있을 때 당회는 2주 안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 공동의회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연초 공동의회: 당회의 결정사항을 들으며, 제직회와 각 회 보고, 결산보고와 차기년도 예산과 사업계획을 채용하며 그 밖의 법대로 제출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연초 정기 공동의회는 당해연도 1월 둘째주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공동의회: 공동의회 결의를 필요로 하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하되 제출된 안건만 처리한다.

제31조(임무 의결정족수) 목사 청빙, 장로와 집사 피택, 정관의 제정과 개정, 예산과 결산 승인, 당해연도 예산액의 5%이상 되는 기채(起債)의 승인, 부동산 취득과 처분, 원로(선교) 목사와 장로 추대, 교단 가입과 탈퇴, 교회개척 등을 의결하며, 목사청빙, 장로와 집사 피택, 정관의 제정과 개정, 부동산 취득과 처분, 교단가입과 탈퇴 등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며 그 밖의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백표는 전체 투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2조(회의록)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6 장 당회(치리회)

제33조(성격) 본회의 당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정치 제11장 제80조에 의하여 구성한 치리회이다.

제34조(조직과 운영)

- ① 당회는 본 교회 목사와 치리 장로로 조직한다.
- ② 소집: 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소집하며, 본 교회 목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장로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 소집하며,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사임)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過半數)가 소집할 수 있다.(정치 제11장 제82조).
- ③ 당회 성수 및 의결 : 목사 1인과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 ④ 당회 서기 : 당회원 중에서 선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 당회의 회록과 각종 명부를 기록 보관한다.

제35조(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정치, 제11장 제83,84조).

1.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總察:보살핌)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 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입교인 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交附)하며 제명도 한다.
3. 예배와 성례를 거행한다.
4. 장로와 집사를 임직한다.
5. 각 항 현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 각 항 현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성한다.
6. 권징 하는 일을 행한다.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한다.
8. 노회에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한다.
9.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결정한다.
10. 교회에 속한 부동산에 관한 일을 정리한다.

11. 교회의 사업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다.

제36조(당회의 권한) 당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 소집
2. 공동의회 안건 및 정관 개정안 발의
3. 장로 집사 권사 후보 추천
4. 직원의 임면
5. 교회의 관리 감독
6. 특별회계의 신설 및 폐지
7. 자체의 결의

제37조(당회장 유고시) 당회장 유고시 다음과 같은 회장에 의해 회의를 주관한다.

1. 임시당회장 : 당회장이 사임하였을 경우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한다.

파송이 없는 경우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회집 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한다
(정치 제11장 제82조).

2. 대리회장 : 본회 목사가 신병, 출타 등의 사유로 공석일 경우 당회의 결의로 본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하며 임기는 해당회로만 국한한다(정치 제11장 제82조)

제38조(명부록) 당회가 관리하는 각종 명부록은 다음과 같다

1. 학습인 명부(학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입교 년 월 일 기입)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4. 별 명부(1년 이상 실종된 교인)
5. 별세인 명부(별세 년 월 일 기입)
6. 이전인 명부(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7. 혼인 명부(성혼 년 월 일 기입)
8. 유아 세례 명부(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호적대로 기록하되 여자와 아이는 친족의 성명도 기입한다.

9. 교회 역사

제 7 장 제직회

제39조(성격) 본회의 사업 집행 기관으로 제직회를 둔다(정치 제14장 제106조).

제40조(조직) 제직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본회 제직회 회원은 당회원과 집사, 권사로 한다.
2. 제직회는 회장 1인과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약간 명을 두며 다음의 위원회를 둈다.
 - ① 예배위원회
 - ② 선교위원회

③ 재정 및 시설관리위원회

④ 교육위원회

⑤ 성도관리위원회

3. 제직회 각 위원장은 장로가 되며 부장, 회계, 서기는 안수집사, 권사가 되고(이하 “부 임원”이라 한다.), 각 위원는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제직회 회계는 재정부 회계가 겸한다.

제41조(회집) 정기 제직회는 1년에 4회이상 소집하며, 그 일자는 당회가 결정하고 임시 제직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2조(개회성수) 제직회 및 부 개회성수는 다음과 같다.

1. 개회성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으로 하며, 통상적인 사무처리는 출석한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한다.
2. 개회 성수가 현저히 적으면 회장의 직권으로나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기 할 수 있다.

제43조(제직회 직무) 제직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한 금전을 관리 집행한다.
2. 선교, 구제와 경비에 관한 업무와 금전을 출납한다.
3. 매년 말 공동의회에 1년간 경과 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익년도 교회사업과 예산을 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예산편성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4조(각부의 직무) 제직회 각 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예배위원회 : 예배기획, 성찬과 성례에 관련된 일, 현수막, 예배용품관리, 방송실, 인터넷 방송, 방송기자재 관리 또는 예산 및 지출업무를 관장한다.
2. 선교위원회 : 국내 전도 및 교육, 태신자관리, 전도용품관리, 국내 해외선교,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의 관련된 업무기획, 집행 또는 선교비 예산, 선교현금수입, 지출업무를 관장한다.
3. 재정 및 시설관리위원회
 - 1)재정:교회의 일반 재정을 관리 집행하되 예산을 통괄하고, 현금의 수입과 지출 업무를 장리하여 각 부에 집행하는 예산을 경리하며, 타 부에 속하지 않는 항목의 예산을 장리한다. (인건비, 인건비성 예산, 통신, 교통, 인쇄, 회의, 소모품, 상회비, 잡비, 예비비등)
 - 2)시설관리 : 교회 건축물의 신축, 개축, 건축물의 유지보수, 비품의 구입 유지 보수 폐기, 전기, 냉난방, 상하수도, 정화조 등 또는 교인 수송, 차량의 운영관리에 관한업무와 예산을 관장한다.
4.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교육 또는 각 교육기관 업무기획 및 집행 관련된 직무와 예산을 관장한다.
5. 성도관리위원회 : 새 신자 관리, 양육, 성도관리, 성도복리후생, 구제, 심방과 교인의 애경사 등 또한 교회 내에 장례와 추도식 등에 관한 업무 예산을 관장 또는 협력한다.

제45조(사업계획) 제직회 각 위원회는 차년도 예산계획을 12월 첫째주일까지 예산편성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예산편성위원회)

- ① 본회는 제직회 각위원회 임원을 위원으로 하는 당해 연도 예산편성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위원회 위원장은 재정위원장이 되고 서기는 제직회 서기가 겸임한다.
- ② 본 위원회는 제직회 각 위원회가 제출한 익년도 예산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12월 둘째주일까지 당회를 경유하여 공동의회에 제출한다.
- ③ 본 위원회는 제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회의록) 공동의회 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와 요령 및 결과를 회의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서기가 기명한 후 이를 보관한다.

제 8 장 부속기관

제48조(교회학교)

- ① 교회학교 교육의 목적은 성경말씀을 가르침으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믿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 ② 교회학교는 당회의 관할 하에 두며, 교육위원회가 지원 관리한다.

제49조(조직) 교회학교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 교회학교 교장은 담임목사가 되며 교감은 당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각 부장 및 교사는 당회의 결의로 담임목사가 이를 임명한다.
3. 교회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 ⑦ 유치부 : 3세부터 취학 전 어린이
 - ⑧ 아동부 : 초등학교 1 ~ 6학년까지
 - ⑨ 학생부 : 중, 고등학생 연령
 - ⑩ 청년부 :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전까지

제50조(선교회) 선교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회 봉사와 전도 및 선교사업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1조(구성)

- 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선교회를 둔다.
 - ⑦ 남 선교연합회로 각각 연령별로 베드로(60세 이상), 바울(50~59세), 디모데선교회(결혼~49세)로 3개 선교회를 둔다.
 - ⑧ 여 선교연합회로 각각 연령별로 루디아(70세 이상), 나오미(60~69세), 한나(51~59세), 도르가(41~50세), 에스더(결혼~40세)여선교회로 5개 선교회를 둔다.
- ② 각 선교회 회원의 범위는 당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52조(승인) 각 선교회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의 사항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1. 연합회 임원임명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2. 각선교회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 계획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제53조(찬양대)

- ① 본회는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찬양대를 설치 운영한다.
- ② 찬양대의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되 다음 사항은 당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 1. 찬양대 임원선거 결과 및 연중행사 계획, 집행에 관한 건
 - 2. 찬양대 관련된 업무기획, 집행과 예산업무.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③ 찬양대에 준하여 찬양단을 둘 수 있다.

제54조(조직) 찬양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찬양대 조직은 찬양대장, 음악감독을 두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찬양대장, 음악감독의 임명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 2. 각부의 지휘자, 반주자는 찬양대장, 음악감독의 추천으로 당회에서 심사 후 결정한다.
- 3. 찬양대는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 ① 기쁨찬양대: 1부 예배
 - ② 은혜찬양대: 2부 예배
 - ③ 브니엘찬양대: 교회학교 예배

제55조(구역조직)

- ① 본회는 성도 개인과 가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심방하기 위하여 교회 관할 교구 내에 수개의 소구역으로 분할 관리한다.
- ② 구역의 수와 경계는 성도의 분포, 연령,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회에서 결정한다.
- ③ 구역에는 구역장을 두어서 구역 내 성도의 가정을 심방하게 한다.
- ④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교구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제 9 장 인사

제56조(인사권) 본회의 인사는 담임목사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결의하고 당회장이 시행한다(직무상 노회로 되어 있는 부교역자 인사문제는 헌법의 제한을 받는다.)

제57조(인사범위) 본회의 인사는 명예권사 서리집사의 임명과 모든 조직과 부서의 책임자와 조직원 그리고 교역자의 임용을 그 범위로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임원의 인사는 제외한다(선교회, 청년회, 학생회).

제58조(실행)

- ① 모든 인사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일 이후에 실시한다.
- ② 제직회 각 위원회의 임명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한다.

제59조(임기) 임명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직회, 위원회 임원에 한하여 1회의 연임을 원칙으로 한다. 명예권사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심의) 당회는 인사 대상자의 신앙과 자질과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임명하여야 한다.

제61조(순종) 교회는 당회의 임명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 하며 감사와 충성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는 당회장에게 통고하고 당회장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천거) 인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천거할 수 있다.

1. 인사권자의 인사가 시행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해당기관 또는 해당 조직의 장이 당회에 천거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일하고 싶은 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당회에 청원할 수 있다.
2. 제1항에 대하여 당회는 특별한 결격사유나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63조(부교역자)

- ① 부교역자는 당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회가 결정하고 이를 청빙하되 계속 시무는 헌법에 따른다.
- ② 부교역자의 담당업무 조직 배치 등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 ③ 청빙해야 할 부교역자의 수와 직급 성별은 당회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64조(기타직원)

본회는 모든 일을 교인들의 봉사에 의하여 실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채용하여 유급제로 운용할 수 있다.

제 10 장 재산

제65조(교회재산) 본회의 재산이라 함은 교인들의 십일조 등 각종현금과 연보, 기타 교회의 수입으로 이루어진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하며 이는 본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總有)로 한다.

제66조(취득원칙) 본회 부동산 취득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신중히 검토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는 교인들로 하여금 특별현금을 작성케 할 수 있다.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되는 현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회는 기채(起債)를 결의하고 이를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부동산은 사용목적, 사용가치, 위치, 가격조건, 법적 저촉여부, 장기전망, 처분의 난이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제67조(부동산 취득과 등기)

- ① 부동산의 취득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공동의회가 당회에 위임하여 취득 할 수 있다.
- ② 부동산 소유 등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로 한다.

제68조(사용) 본회 부동산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부동산은 본회가 전용(全用)한다.
2. 교인 및 그 가족의 결혼식 등의 예식으로 사용코져 할 때에는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상회인 노회나 총회 또는 본 교회의 기관이 소속한 연합회 등의 사용에 대여 할 경우에도 당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타 교회와의 합동 행사나 일반 사회단체 및 기관의 사용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당회가 승낙 여부를 결정한다.
5. 본회의 부동산을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있다.
6. 대여할 부동산의 종류와 범위 및 조건은 당회가 결정하고 그 계약은 당회장 명의로 한다.
7. 대여로 인하여 수입된 금전은 재정위원회가 관리한다.

제69조(부동산관리)

- ① 부동산의 관리는 당회가 담당하며 관리를 위한 재정 지출은 제직회에서 집행한다.
- ② 교회는 부동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③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를 작성하고 관련 등기문서와 함께 보관한다.
- ④ 당회는 부동산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제직회의 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0조(처분) 본회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교회의 모든 재산의 사용과 처분은 교회의 유익을 우선해야 한다.
2. 불필요하게 된 교회의 재산은 손익 여부를 판정하여 적절히 처분할 수 있다.
3. 부동산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에 의한다. 다만 공동의회가 당회에 위임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71조(재산 취득, 처분 집행권) 본회의 공동의회에서 결정된 취득과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 당회의 결의로서 담임목사에게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대행케 한다. 단, 담임목사가 사임하여 공석일 때에는 공동의회에서 장로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분쟁시 재산권) 분쟁시 교회 재산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둔다.

1. 지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지교회의 목적 사업에 사용한다(총회 헌법 정치 제15장 113조).
2. 어떤 경우에서라도 교회 분립으로 인한 재산의 분할은 불가하다.

제 11 장 재정

제73조(회계연도) 본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4조(범위) 교회의 모든 재정은 현금과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제75조(원칙) 본회 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공개되어야 한다.
2. 본회의 재정 실무는 재정위원장이 담당한다.
3. 본회의 모든 기관의 현금 수지상황을 매주 마다 재정위원장 또는 회계담당자가 당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당회장 결재가 있어야 한다.
4. 당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위원장이 결재 후 당회장 귀임 후, 후결 처리한다.

제76조(회계구분)

- ①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 ② 일반회계는 통상적인 현금을 관리 집행한다.
- ③ 특별회계는 특수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설정하여 운용 관리한다.

제77조(재정 집행권) 재정 지출 집행은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한다.

1. 공동의회에서 인준된 재정 지출근거가 있어야 한다.
2. 담당위원장은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재정위원장은 당회장의 결제 후 지출한다.
3. 당회장이 공석이거나 유고시에는 재정위원장이 집행하고 당회장 귀임 후 후결한다.
4. 전결권은 당회장이 승낙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5. 공동의회에서 인준 받지 않는 재정을 지출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출근거를 확립해야 한다.
 - ① 제직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예비비 범위 안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 ②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체 예산의 5% 이상을 결의할 때에는 임시 공동의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6. 교회를 대표해서 지출하는 교회 및 노회의 애경사, 심방 등의 지출 항목은 제직회 해당 위원회의 청구로 지출하여 담임목사가 집행한다.

제78조(기장방법) 본회의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다.

제79조(장부조직) 본회의 회계장부는 원부와 보조부로 나누어 기장하며 보조부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80조(관리) 모든 재정 수입은 재정위원회의 집계를 마친 후 담임목사 결재를 득하여 익일(금융기관 영업일)에 지정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지정 은행은 당회에서 결정한다.

제81조(지출 증빙서) 본회의 재정을 지출할 경우에는 소정양식의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영수증 또는 이에 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2조(교육) 현금은 십일조와 감사현금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신앙의 표현이어야 한다. 당회는 바른 현금을 위하여 수시로 교인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82조(관리의무) 교회재정은 하나님께 드리는 현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신앙의 바탕 위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2 장 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예우

제84조(교역자 시무 기간)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및 유급 직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담임목사 : 위임목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70세 정년까지 시무 하며(정치 제5장 제32조1항), 임시목사의 시무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부목사 : 부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속 시무할 경우 당회장이 노회 청원으로 승낙을 받는다. 당회장이 노회에 계속시무를 청원하지 않을 경우 사임으로 간주한다(정치 제5장 제32조 3항).
3. 강도사로 시무 중 부목사로 임직할 경우 : 당회의 결의로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는 헌법에 준한다.
4. 전도사로 시무중 강도사로 인허될 경우: 당회의 결의로 시무할 수 있으며 계속 시무 여부는 당회장이 결정한다.
5. 전도사 시무: 전도사 청빙은 당회의 결의로 시행하며, 시무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계속 시무 여부는 당회장이 결정한다.(정치 제4장 제27조)

제85조(관리 및 사무직원) 관리 및 사무직원은 당회의 결의로 시무 및 계속 시무를 결정하며 담임목사 관할 하에 둔다.

제86조(예우)

- ① 교역자와 직원은 교회 재정 형편에 따라 사례한다.
- ② 교역자와 직원이 교회 용무로 출장할 때는 실비로 지급한다.
- ③ 교역자와 직원에게는 연구와 수양을 위하여 매년 일정 기간 휴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휴가비를 지급한다. 휴가비는 예산에 편성한다.
- ④ 6년 이상 성실히 목회한 담임목사에게는 매 7년이 되는 해(안식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교육, 연구 또는 휴양할 기회를 줄 수 있다. 기간과 기타 결정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 ⑤ 교역자에게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사택 제공과 기타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87조(퇴직위로금 및 지급)

- ① 교역자나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 ② 퇴직위로금은 보수월액(기본 사례금 및 상여금)에 근무 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 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근무 년 수 계산에 있어서 6개월 초과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이하는 1/2년으로 한다.
- ④ 교역자나 직원이 특별한 사유로 본인요구에 의하여 퇴직위로금 중간정산 및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당회의 결의를 거쳐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제 13 장 사업과 법인

제88조(원칙) 본회는 제1장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9조(형태)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은 비영리로 한다.

제90조(주체) 본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의 주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산하 기관 및 조직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제91조(종류) 본회가 실시하는 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도 및 선교와 관련된 사업
2.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사업
3. 구제와 관련된 사업
4. 사회복지 사업(고아원, 유치원, 양로원, 장애시설, 미혼모시설 등)
5. 의료사업
6.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2조(법인설립) 본 교회는 제90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별도 법인이나 조직을 둘 수 있다. 교회 법인설립은 당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 14 장 회계 감사

제93조(정기감사) 본회 및 각 기관의 회계는 매년 2회(6월, 12월)에 걸쳐 감사(監事)의 감사(監查)를 받아야 한다. 감사(監事)는 당회원 중에서 당회가 임명 한다.

제94조(수시감사 및 지도교육) 감사는 필요시 본 회계 및 각 기관의 회계를 수시감사 및 지도교육을 한다. 감사결과 착오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당회에 보고하여 그 사안에 따라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감사 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동 책임으로 한다.

제95조(감사 결과 통보에 대한 조치) 각 기관은 감사의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고 당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5 장 부칙

제96조(보칙 補則) 본 규정에 미비 된 것은 교단 헌법에 따르며 헌법에 없는 경우는 그 성격에 따라 공동의회와 당회 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97조(정관제정 제한) 교단 헌법과 다른 내용을 정관으로 제정할 수 없다.

제98조(정관개정) 본회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공동의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이 필요 할 경우 당회에서 개정안을 공동의회 5일전까지 당회 결의 후 공고하여야 한다.

제99조(시행일) 본 정관은 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당월, 일부터 시행한다.

- 2011년 7월 3일 정관제정
- 2017년 12월17일 정관 개정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은교회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724번길 34(원종동362-1번지)

당회장 이 용덕 (인)

서 기 류 면수장로(인)

회 원 김 인규장로(인)

회 원 황 성규장로(인)

회 원 김 명수장로(인)

회 원 송 왕섭장로(인)